

#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유엔 ‘법관 및 변호사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 질의 답변서 및 추가정보 제출

참여연대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PART 1. 질의에 대한 답변

### 1. 법원행정처가 법관의 임명 및 징계 등을 결정할 구체적인 권한이 있는지?

법원행정처는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 법원의 인사, 예산, 회계, 시설, 통계 등에 관한 광범위한 범위의 사무를 관장함(「법원조직법」 제19조 참조). 법관의 임명, 인사 및 징계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는 법령을 제·개정 하는 것도 법원행정처의 사무 범위에 해당함.

‘법원행정처 업무분장현황 자료(2018)’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은 사법부 인사 정책 및 법관 인사에 관한 구체적 운용계획을 마련·시행하고 법관 인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무성적평정 등을 관리하고 있음.

법원행정처가 구체적으로 개별 법관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나 개별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결정, 법관에 대한 진정, 비위사건의 조사 및 징계 전반에 관한 사무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서 담당하고 있음.

### 2. 법원행정처가 사찰한 법관은 어떠한 기준으로 선정된 것인지? 법원행정처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사람들인지 혹은 법원행정처의 상고법원 법안에 대해 반대한 사람들인지?

법원행정처의 사찰 대상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1) 대법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의견을 표명한 법관
- 2) 관련 정책에 대해 비판 의견을 제기할 것으로 판단되는 법관으로 구성된 학술연구단체(국제인권법연구회 인사모 등)
- 3) 판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데 사용하는 익명 인터넷 게시판(“이판사판야단법석”)

먼저 1)과 관련하여, 특별조사단에 의해 공개된 문건들에 따르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은 임종헌 전 차장의 지시로 2014년~2016년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낸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대응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의 문건들을 작성하였음. 그 대상이 된 차성안 판사의 경우, 언론사(시사인)에 상고법원 도입 반대의 논조로 5회에 걸쳐 글을 기고하였는데, 이를 놓고 정치적 중립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바 있음(‘차OO판사 시사인 칼럼 투고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88] 문건 참고). 더 나아가 차성안 판사가 다른 판사들에게 보낸 개인

적인 이메일 내용 등을 토대로 개인적인 성향이나 상고법원에 대한 견해 등을 분석함(‘차OO판사 게시글 관련 동향과 대응 방안’[87] 문건 참고). 또한 탐문 등을 통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성향(예를 들어 “대학 시절 학생회 등에서 활동한 사실은 없으며, 비주류 운동가형에 해당”)을 분석한 내용도 확인됨. 재산관계특이사항을 검토한 내역도 있는데, 2009년에서 2015년에 이르기까지 차 판사의 재산신고 내역을 정리하고, 사인간의 채무까지 별도의 항목으로 정리해둬(‘차OO판사 재산관계 검토’[89] 문건 참고). 법원행정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 의견을 제기한 차 판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개인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미리 검토한 것으로 보임

이와 유사한 문서로 “송승용 판사 자유게시판 글 관련[342]”, “박노수 판사의 동향 관련 자료” 등이 있음.

특조단은 그 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주로 행정처가 추진하는 사법정책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법관들이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법관들에 대하여 비공식적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동향을 파악하였다고 보이고, 특정 연구회 소속 법관들을 그 핵심 그룹이라고 분류하면서 그 법관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시각으로 사법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전제로 동향을 파악하거나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고 보임”(90쪽)이라고 판단한 바 있음.

2)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국제인권법연구회가 ‘진보적인’ 성향(사법정책 및 개혁 관련 진보적인 입장)의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하며, 상고법원 등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경우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함. 박병대 당시 법원행정처장은 2015.7. 경 이규진 당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인사모’를 챙겨보라, 윤리감사관실의 검토도 거쳐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고, 이후 이규진은 본인 스스로 혹은 법원행정처 구성원들과 함께 그 지시를 이행함. 인사모 모임에 참석한 발언자들의 발언 내용과 취지, 모임의 분위기와 토론의 경과, 참석자들의 반응, 뒤풀이에 합류한 법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건을 작성함.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모 내부 토론 내용을 보고하기도 하였음(‘새로운 소모임의 구성 알림 및 경과보고’ ‘국제인권법연구회-1(인권과사법제도소모임)의 방향’ [1] 문건 참고).

3)과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법관들의 익명 인터넷 카페인 ‘이판사판야단법석’에 상고법원 설치 등 사법정책 현안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글이 많이 게시된다는 이유로 폐쇄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함. 카페의 현황을 정리하고, ‘대법관 제청’, ‘기업인6 가석방’, ‘전관예우’, ‘상고법원’ 등 민감한 소재의 게시글의 통계 등을 분석하기도 했으며, 회원으로 가장하여 카페 내에 활동 중단에 대한 글을 게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이판사판야단법석 다음 카페 현황 보고’ [344] 문건 참고). 민감한 글은 일정 기간 게시 후 자진 삭제하자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조회수를 체크하고 그 취지에 공감하는 반응이 많다고 분석하기도 하였음(‘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보고’ [27]).

### 3. 실제 상고법원이 설치되었는지? 만약 설치되었다면 사법부 내의 기능 또는 위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치되지 않았음

현재 법체계상 대법원이 최종심을 담당하고 있는데, 상고법원이 도입되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상고 사건의 최종심을 상고법원이 담당하게 되었을 것임.

즉, 상고법원 판사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건의 사실상의 최종심을 담당하게 되는데, 상고법원의 판사는 현 대법관들과는 달리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법원장에 의하여 바로 임명됨.

대법원장으로서 상고법원 판사 전원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게 된다는 점에서 인사권을 무기로 하여 일반 법관들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즉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의 고위 법관으로서 관문이 매우 좁은 대법관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상고법원 판사로 임명받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수뇌부로서는 더 높은 지위에 대한 고위 법관들의 열망을 이용하여 그들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임.

### 4.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리한 사람이 누구인지? 이 리스트를 가지고 있거나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현재까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410개 문건 중 특정 법관의 이름을 리스트로 작성한 것은 없음. 그러나 대법원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법정책에 비판의견을 표명하거나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한 사실은 확인됨.

특조단의 조사 대상 문건을 살펴보면 “인사모 등 핵심 회원에게 선발성 인사, 해외연수 등에서 불이익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 사실은 인정됨(‘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검토’ [281, 282, 287, 291] 문건 참고). 특정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것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까지는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려움.

### 5.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한 설명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대법원 행정예규인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에 근거하여 2011. 8. 설립된 사법부 내의 학술모임임. 인권과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은 국정원이 경력 법관 지원자에 대한 면접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 등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물어본 것(일종의 사상 검증)에 대해 침묵하는 법원 분위기에 문제의식을 느낀 법관들로 이루어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소모임임. 인사모는 2015. 7. 내지 8. 경 두 차례의 예비모임을 거쳐 2015. 9. 첫 정식 모임을 가지고 발족하였음. 인사모는 위 예비모임 당시부터 상고법원 문제를 포함하여 합의부 조직과 운용, 사실심 충실화, 판사의 사법행정 참여방안, 법관인사 이원화 및 고법부장 제도 폐지 등 사법부 내 사법제도 주요 현안에 대해 구성원간 논의하고 의견을 교환해 왔음.

박병대 처장은 이규진 상임위원에게 인사모가 “우리법연구회”와 비슷한 모임으로 보이니 잘 챙겨

보라고 지시. 이규진은 이들이 “법관의 업무 부담 개선, 상고법원 설치 반대 등 대법원과 반대되는 목소리 내고 있다”며 “대법원과 다른 의견이 외부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사실이 있음.

**6. 양승태의 권한이 대법원장으로서 주어지는 권한인지, 아니면 법원행정처의 장으로서 주어지는 권한인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함(「법원조직법」 제9조제1항).

양승태 대법원장은 사법행정의 최종 책임자로서의 자신의 권한을 남용한 것.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과 행정처의 조직을 인적, 물적으로 완전 분리하고 승진인사를 폐지하여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바꾸겠다고 강조한 바 있음.

**7. 국제인권법연구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2016. 12. 경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소모임인 인사모가 주축이 되어 연세대 법학연구원과 법관 인사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논의함. 12. 24. 경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2017. 1. 3. 실장회의에서 연구회의 공동학술대회 추진 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하여 1차 보고를 함. 이후 이규진은 ‘인사모 관련 공동학술대회(1), (2)’ 문건을 작성하여 1. 13. 처장 주례회의에서 대책으로 보고하였음.

2017. 1. 23. 연구회 운영위원회에서 공동학술대회를 2017. 3. 25. 개최하기로 최종 결정하자 이규진 상임위원은 1. 24. 연구회 기획팀장인 이탄희 판사에게, 이탄희 판사 등 연구회 회원 2명의 심의관 추천을 거론하며 공동학술대회가 법원 내부의 행사로 치러지도록 하고, 특히 언론에 보도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함.

법관 인사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외부에 표출되는 것을 우려하여 학술대회를 내부에서 축소하여 진행하도록 요구한 것.

**8. 중복 가입 금지 관련 글을 올린 것이 공개적인 것인지?**

2017. 2. 13.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의 중복가입 금지 원칙에 따라 법관들에게 중복 가입한 전문분야연구회를 정리하고, 만약 정한 기한 후에도 중복 가입되어 있을 경우, 뒤에 가입한 연구회는 탈퇴하는 것으로 전산 상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코트넷’ (내부 통신망) 에 공지함. 모든 판사들은 코트넷에 게시된 글을 확인할 수 있음.

**9. 중복가입을 금지한 것이 더 이상 어떠한 학술모임의 멤버가 될 수 없다는 의미인지?**

‘법원 전문분야연구회 관련 예규’ 제3조제2항은 법관은 2개 이상의 연구회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고, 다만 법원행정처장이 그 예외가 되는 연구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그러나 이는 사문화된 것과 다름이 없을 정도로 실제 시행이 되지 않았던 규정임.

인사모 소속 법관 중 다수가 다른 연구회에도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법원행정처는 인사모를 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중복가입해소조치를 검토함. 인사모 소속 법관들이 여러 연구 단체에 중복 가입된 상황을 자발적으로 해소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입한 단체(보통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탈퇴가 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한 방안이었음.

## 10. 조사단 조사 언제 진행된 것인지? 조사 보고서가 대중에 공개된 것인지?

대법원 진상조사단 : 2017. 3. ~ / 2017. 4. 18. 조사 보고서 발표

추가조사위원회 : 2017. 11. 13. ~ 조사 진행 / 2018. 1. 22. 조사 결과 발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3차):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조사 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 논의하기 위해 기구 구성. 2018. 2. ~ 2018. 5. / 5. 25. 조사 보고서 발표

이와 함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410개 문건 중 일부 언론에 공개 / 2차 공개를 통해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문건들도 언론을 통해 공개함.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한 바는 없음(민변, 참여연대 등 정보공개청구).

## 11. 조사단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특별조사단의 총평: “법관들을 뒷조사한 사실은 확인되나, 리스트에 포함된 법관들에 대하여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음”

사법부 관료화의 방지책을 마련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는 권고와 함께, 의혹에 관련된 행위자 별로 관여 정도를 정리하여 징계 청구권자에게 전달

관여 정도가 큰 법관의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됨(업무배제)

이후 검찰 수사 시작됨(2018. 6. 15. 경)

## 12. 법관 성향 분석한 내용 중 ‘성향’ - 어떤 성향을 말하는 것인지? 정치적인 입장?

대법원이 추진하는 정책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진 사람

국제인권법연구회 내 인사모 법원 내 진보 성향 법관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와 유사한 모임으로 평가

## 13. 법관의 개인적 사정을 분석한 내용 -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차성안 판사 등 개인 간의 채무 관계

#### 14.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사법행정권 남용이나 재판거래로 인한 범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론은 누가 내린 것인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조사보고서 기재 내용)임.

특별조사단 구성: 안철상 법원행정처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김홍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이성복 전국법관대표회의 당시 의장, 정재현 전산정보관리국장, 구태회 사법연수원 교수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 구성하겠다고 하였으나, 법원 구성원들로 구성되어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는 외부 위원은 아니었음. 또한 조사의 한계도 있었음.

현재 검찰에서 관련 수사 진행 중이나, 법원은 관련 전현직 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민변과 참여연대의 요구사항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의혹, 법관 및 시민에 대한 사찰, 기타 사법행정권 남용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재발방지를 요구함.

- 법원행정처는 검찰의 수사에 필요한 문건 등 각종 자료를 검찰에 임의제출하라.
- 국회는 현재 발의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 및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현직 법관들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라.
- 국회는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 등 진상규명활동에 적극 나서라.
- 국회는 법원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하기로 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하라.
- 정부는 과거 사법개혁의 역사를 참조하여, 사법부·행정부·입법부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사법개혁기구를 구성하라.

### 제안 권고

민변과 참여연대는 특별보고관이 이러한 활동을 주목하여 아래의 사항을 권고할 것을 기대함.

- 법원의 수사 협조와 법원개혁 노력 권고
- 국회의 진상규명 노력과 관련 입법 활동 권고

## PART 2. 추가자료

### 1. Background : 배경

한국에서 발생한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건은 행정부 또는 행정부 수반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일반적 사례와 달리, 대법원장과 그를 보좌하는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들이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은 당초 법원행정처로 부임한 판사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판사 뒷조사 파일이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실시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을 오남용한 실태가 드러난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지만 이와 관련 한국 사법부는 법안 발의권, 예산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아 행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당시 박근혜 정부는 상고법원 설치로 인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은 강해지는 반작용으로 대통령의 영향력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상고법원 설치에 미온적 자세를 취한다. 이에 양승태 대법원은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선회시키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평의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재판 일정을 연기시키는 등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정부 입법 발의가 어려워지자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를 시도하면서도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2. Alleged violations : 재판거래로 인해 법관의 독립성이 침해된 사례

양승태 대법원은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청와대(행정부)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시국/노동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성향에 맞게 판결하는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말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사법부는 그동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해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에 들어맞는 대법원 판결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1) 법관의 독립성 침해 사례

##### ● 1-1) 청와대와 대법원간 비밀회동

- 1차 회동 : 2013년 12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차한성 법원행정처장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강제징용소송의 최종 판결을 최대한 미루거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요청하였다.
- 2차 회동 : 2014년 10월,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은 박병대 법원행정처장, 조운선 청와대 정무수석, 윤병세 외교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등을 비서실장 공관으로 불러 징용소송 진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후속조치를 논의하였다.

##### ● 1-2) 재판관 징계 검토

- 군부정권이었던 박정희 정권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 배상을 인정한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 김 모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릴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대법원은 해당 조치는 위헌이지만 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김 모 판사가 이러한 대법원 판례를 따르지 않자 해당 판사에 대해 징계 방안을 검토했고 판결을 이유로 판사를 징계한 사례가 없자 해외 사례까지 수집하도록 지시하였다.

### ● 1-3)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 취소 압력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시절 일선 법원 재판부가 내린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취소하게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서울 일선 법원에 근무할 당시 A부장판사는 모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과 관련해 공중보건의 재직기간을 법상 재직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 한정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을 내렸다. 법원행정처 고위관계자가 양 전 대법원장 지시를 받아 A부장판사에게 재판부 직권으로 취소하도록 압박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정보국을 동원해 내부 전산망에서 결정문이 열람되지 않도록 은폐조치까지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 검찰은 당시 현재와 같음을 빚어온 양 전 대법원장이 한정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애초 재판부 결정 취지에 불만을 갖고 법원행정처를 통해 압박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가 법원 제청을 받아들여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법부 내에 판례로 통용되던 특정한 법률 해석이 위헌이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미 내린 결정에 대법원이 불법으로 개입, 재판 침해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 ● 2-1) 긴급조치 사건

- 사건 요지 : 2015년 양승태대법원은 (유신정부 시절) “긴급조치 발동이 대통령의 고도 통치 행위”라며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은 맞지만 국가가 손해배상할 책임은 없다”고 판결하였다.
- 제기된 의혹 : 2015년 7월 말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소송의 소멸시효를 엄격히 적용한 판결에 대해 “부당하거나 지나친 국가배상을 제한”했다고 소개했다. 유신 시절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상황과 정치적 함의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기재돼 있다.

### ● 2-2) 일제 강제징용 사건

- 사건 요지 :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두 차례 소집한 공판회동을 통해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2년 대법 판결을 지연시키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법원행정처와 청와대, 외교부, 전범기업 측 소송 대리인과 여러 차례 접촉해 재판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가 소송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하고 실제로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도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다. 의견서 제출을 비롯한 소송 지연 계획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



- 제기된 의혹 :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의견서를 빌미로 결론을 미루면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거래 대가로 상고법원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동시에 법관의 해외 공판 파견 등을 거래로 삼았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2-3) 노동 사건 : ① KTX 승무원 해고소송, ②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③ 전교조 법외노조 집행정지 관련 사건,<sup>1</sup> ④ 통상임금 판결
  - 사건 요지 ① :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한 KTX 해고승무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코레일이 실질적 사용자라고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2015년 2월 대법원은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존의 판결을 파기하고 승무원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건 요지 ② : 지난 2010년 쌍용자동차 해고자 153명은 정리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항소심은 해고가 정당화되는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고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리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쌍용차의 경영상 위기가 인정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주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판결이 확정 되면서 해고자들의 복직이 되지 못했다.
  - 사건 요지 ③ : 전교조는 2013년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내린 것에 맞서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소송(본안)’과 함께 ‘효력집행정지소송(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 임시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4년 9월 서울고등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으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가 재항고를 하자, 이를 인용하여 효력정지를 취소하고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다.
  - 사건 요지 ④ : 대법원은 2013. 12. 18. 전원합의체로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였다.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바꾸지는 못하였지만, 민법의 신의 성실의 원칙을 들어 “노사합의로 이미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던 과거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원고 패소 취지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는 판결을 한 것이다.
  - 제기된 의혹 : 2015년 7월 말 작성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KTX 승무원 해고소송과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등을 박근혜와 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꼽았다. 2014년 12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 → 양측(청와대와 대법원)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임’이라고 적혀 있다. 이후 2015년 6월 2일 대법원은 효력집행정지 건에 대해 실제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또 대법원의 재항고 인용 결정이 2심 본안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 실제로 2015년 6월 2일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은 2016년 1월 21일 2심 본안에 영향을 주어 전교조가 패소했다. 현재 전교조는 2016년 2심 본안 판결이 선고된 이후 법외노조 상태이다.

1 2014년 7월 16일,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하는 규약을 이유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교육부가 교사선언과 집회에 참가한 교사들을 고발하는 등 교사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에 대하여, 유엔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게 각각 이와 관련한 긴급청원(urgent appeal)을 제출함.

또한 대법원은 통상임금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진행하였고, 판결이 선고된 후 판결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발표하였다. 그런데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이와는 별도로 법원행정처가 청와대에 판결의 취지를 보고하였고 그 반응을 받았다는 것이다.

● 2-4) ①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건<sup>2</sup> / ② 밀양 송전탑 건설 사건<sup>3</sup>

- 사건 요지 ① : 강정마을 주민들은 지난 2009년 4월 서귀포 강정마을 인근에 국방·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승인한 국방부를 상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승인돼 무효”라며 소송을 했다. 1·2심에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지만 2012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방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 사건 요지 ② : 2013년 10월, 한국 전력이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행한 밀양의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서 국가폭력이 난무했다. 그러나 법원(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10월 9일 주민들이 한전의 불법행위(환경영향평가법 위반, 헬기 소음 기준치 위반)를 지적하며 제기한 공사중지가 처분 신청은 7개월여 동안 끌다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한전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처분은 40여일 만에 전격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 제기된 의혹 : 양승태 사법부가 상고법원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사법부가 최대한 협조한 사례”로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정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 실시계획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함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또 밀양 송전탑 건설 관련 판결에 대해 한전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처분을 인용하고 주민들의 공사중지가 처분을 기각 결정한 판결도 언급하며 “밀양 주민과 한국전력 사이의 대립과 농성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던 상황”이라 분석하며 “한전의 주민들에 대한 공사방해금지처분 인용 결정, 주민들의 공사중지가 처분 기각결정으로 갈등의 확산 방지와 분쟁 종식에 기여”했다고 적었다.

3. Useful information : 검찰 수사와 법원의 영장 기각

6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검찰은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의 수사협조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련자료의 임의제출 거부와 관련자들에 대한 무더기 영장 기각 등으로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6월 수사 이후 현재까지(9/4)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영장 청구 208건 중 발부는 23건에 불과하다. 기각률이 무려 89%에 이르고 있다. 이는 지난 5년 간 전국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이 1% 수준임을 비교해 봤을 때 정상적인 상황이라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은 수백 건에 달하는 대법원 판결문 초고와 하드디스크 등 재판기밀문건을 모두 파기하였다. 법원이 해당 문건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2 2012년 4월 18일, 참여연대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공권력의 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개인청원을 제출함.  
 3 2014년 6월 23일 참여연대는 밀양시청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누리는 것과 관련한 인권 독립전문가에게 긴급청원을 제출함.

세차례 기각하는 동안에 벌어진 일이다. 한편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 현직 판사가 헌법연구관 파견 근무기간 동안 현재의 주요정보를 수집해 대법원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각각 외교부와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8/2, 8/20)한 반면 동일 사건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기각(8/20)했다. ■